

2016.03.16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• 개정이유

기존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된 금액이 과다환급된 경우,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다환급된 부분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.

그러나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이 개정(2016. 5. 6. 시행)됨에 따라 과다환급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, 과다환급에 따른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가산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
따라서 **3개월 이내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도 과다환급금의 연 1천분의 18의 이율로 가산금이 적용**됩니다.

• 시행일자 : 16. 5. 6.(금)

주요내용

① 신설규정

» 제16조(가산할 금액의 이율)

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

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.